

※ 지난 4월 2일자로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89호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취지

전기사업법의 개정(2003.12.30 법률 제7017호)으로 분산형전원 개발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등 동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안전검사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3만5천킬로와트로 함(안 제1조의2)

나. 구역전기사업자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 수요의 7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함(안 제4조)

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로서 당해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구역전기사업자가 남는 전력이나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3조)

마.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연간운영비에 시설비를 포함(안 제21조)

바. 사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2조의3)

사. 허가 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용량의 상한을 지역 냉난방사업의 경우 15만킬로와트, 산업단지집단

에너지사업의 경우 25만킬로와트로 함 (안 제59조의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가. 구역전기사업의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나.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서 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안 제4조제2항)

다. 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서 설비용량의 경미한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에서 제외함(안 제5조)

라.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남는 전력이나 부족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마.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2 등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준용함(안 제19조의2, 제37조의3)

바. 저압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사용전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31조제5항)

사. 숙박업, 가로등, 문화재 등 전기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거용 등에 대한 점검은 완화함(안 제35조의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시행령)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발전설비용량 3만 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 ②(생 략)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법----- ----- ----- ②(현행과 같음)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 기준) <신 설>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 기준) ①법 제7조제5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이라 함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현행 제1항과 같음)
①(생 략) ②(생 략)	②(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①(생 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	제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기준----- -----

현행	개정(안)
제19조(전력거래)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력거래)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대체에너지개발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로서 당해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②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후단 신설>.	②----- 이 경우 당해 자가용전기설비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하거나 남은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발전기 불시정지·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공급능력을 상실한 경우 2.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능력이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 전력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3. 구역전기사업자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당하고 남은 전력이 발생한 경우
③(생략)	⑤(현행과 같음)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현행	개정(안)
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간 운영비는 시설비와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수선유지비·차입금상환원리금 등 그 밖의 비용을 산정할 것 2.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은 회원인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전력거래량에 당해연도의 예상 전력수요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제42조의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생략) ②법 제66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2조의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현행과 같음) ②----- ----- ----- -----
1. ~ 5. (생략)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시설
<신설>	7.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및 콜라텍업의 시설
<신설>	제59조의2(집단에너지

현행	개정(안)
	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현행	개정(안)
	<p>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제17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발전기 불시정지·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공급능력을 상실한 경우</p> <p>2.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능력이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 전력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p> <p>3. 구역전기사업자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전력이 발생한 경우</p>
<신 설>	
	<p>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p>
<신 설>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전기사업법 제27조의 규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현행	개정(안)
<p>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p>
제24조(전력거래수요의 산정기준 등) ①(생략) ②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전력거래수요의 산정기준 등) (현행과 같음) <삭 제>
1.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및 수선유지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은 회원인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전력거래량에 당해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④(생략) ⑤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

